

#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

## 1. 프로그램 목표

우리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실무 경험을 통한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프로그램 내용

가. 실습기간: 2026. 1. 1.(목)~2. 28.(토), 총 1~2개월

1) 2학점(1개월) 프로그램: 실습기간 내 1개월만 진행(교육부 인정 최소 실습기간)

2) 3학점(8주 또는 2개월) 프로그램: 실습기간 8주 또는 2개월간 진행

나. 실습시간: 주 40시간

다. 실습대상: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(3학년 1학기부터 참여)

※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및 학기초과/휴학/유예/수료생,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(해외 포함) 기참여 학생 지원 불가

라. 신청기간: 2025. 11. 3.(월)~12. 19.(금) 17:00

### 마. 선발방법

- 1) 학과(전공)별 실습생 실습기업 매칭&선발 후
- 2) 참여신청서, 자기소개서, 운영 계획서, 협약서를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에 12. 19.까지 제출하여야 하며
- 3) 실습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최종 선발

### 바. 지원사항

- 1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, 기업지원금 지급 시 학교지원금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실습 종료 후 학교지원금 1개월 기준 539,220원, 8주 기준 990,720원, 2개월 1,078,440원 (최저임금 100분의 25 총액)을 실습 기업으로 환급 함, 단 기업사정상 환급처리 불가 시 학생에게 지급)
- 2)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, 학교지원금 1개월 기준 539,220원, 8주 기준 990,720원, 2개월 1,078,440원을 실습 종료 후 학생에게 일괄지급 예정
- 3) 기업지원금: 금액 및 지급 시기는 기업별 내규에 따름

사. 학점인정: 「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및 제36조」, 「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」 의거, 전공선택 2~3학점 인정 (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, 3전공, 융합전공 인정 가능, 연계/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)

## 3. 세부일정

일 자	내 용	비 고
2025. 11. 3.(월)~12. 19.(금)	실습기관 섭외, 실습생 추천	학과(전공)
	3자 협약(기관, 학생, 학교)체결	기관, 학생(실습생), 학교
	학과(전공)별 참가 신청서 접수	접수처: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
2025. 12. 24.(수, 예정)	실습 전 선발 학생 사전직무교육	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 시행 (On-line 교육)
2026. 1. 1.(목)~2. 28.(토)	현장실습학기제 실시 (1개월 또는 8주 또는 2개월)	운영중간점검서, 출석부, 종합보고서 등 (학생 작성)
	실습기관 현장지도 점검	지도교수 작성(실습기간 내 1회)
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	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, 학생설문조사서, 학생종합보고서 작성	실습기관, 학생(실습생) 제출처: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
2026. 2.~3.	학점인정 및 학교지원금 지급	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, 교무팀

#### 4. 실습생 지원자격

- 가. 4학기 이상 이수한 우리대학교 재학생
- 나.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(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)
- 다. 현재 미취업상태(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)
- 라.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
- 마.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

※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(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)

- 실습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 하는 경우
- (실습 기관과 학생 간) 취업(조기 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

#### 5.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실습기관 참가 자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
- 나.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위주 (스타트업, 벤처기업 가능)
- 다. 소비 향락업체, 외근직 보험영업, 다단계 판매업체, 3개월 미만의 계절적/일시적 인력 수요업체, 단순 용역업체(경비, 건물관리, 청소, 주차 등)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참가 불가

#### 6. 실습기관 교육 운영

- 가.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
- 나.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,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,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
- 다.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**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**해야 하며,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기입 요망 (7. 지원금, '마. 예시' 참고)
- 라. **배정된 교육 시간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,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 진행 불가**
- 마. 세부 교육내용은 불임 2의 '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'에 입력하여 제출

#### 7. 지원금

- 가.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:** 기업지원금(75%)에 학교지원금(25%)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(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선 지급 후, 학교에서 기업에 최저임금의 25% 금액을 환급함)
- 나. **자율 현장실습학기제:** 1개월 기준 539,220원, 8주 기준 990,720원, 2개월 1,078,440원 학생에게 지급 + 기업지원금 지급(기업별 지원 금액 상이함)
- 다. 기업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신청서에 지급액 반드시 작성
- 라. 기업지원금 지급기준: 「**최저임금법**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**직무 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(실습시간=전체시간-교육시간)**
- 마. 예시

구분	교육시간	실습시간	월 기업지원금	비고
표준 현장실습학기제	25%	75%	2,156,880원	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25% 학교지원금을 기업에 환급 예정
자율 현장실습학기제	30%	70%	1,509,816원	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25% 학교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 예정
	40%	60%	1,294,128원	
	50%	50%	1,078,440원	
	60%	40%	862,752원	
	75%	25%	539.220원	

※ 2026년 최저임금: 시급 10,320원(월 2,156,880원)

## 8. 프로그램 관련 실습기관 의무사항

- 가. 학생 산재보험 가입 후 “산재보험 가입 증명서”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 담당자에게 e-메일로 송부  
나. 실습 종료 시 학점인정 관련 서류 실습기업 현장실습 담당자 확인 후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에 제출

## 9. 신청방법

- 가.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“붙임 1번” 서류 작성 후 학과/전공 사무실로 제출  
※ 신청서 접수 이전 우리대학교 취업진로지원팀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요망  
**(SM challenge e-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)**  
상당 신청 바로 가기 주소 (<https://smcareer.smu.ac.kr/main.asp>)  
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→ e-포트폴리오에 로그인(학번/비번) 후 → 상단 메뉴 중 상당신청 클릭 → 컨설턴트  
상당 → 단과대 담당 컨설턴트 선택 → 첨부파일에 현장실습 자기소개서 첨부 → 상당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 
나. 전공(학과)사무실에서 “붙임 1” 및 “붙임 2(평가표 제외)” 서류 수합 후 확인하여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  
에 제출(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반드시 제출)

## 10. 학점인정

- 가.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, 종합보고서, 만족도조사 등을 근거하여 전공선택 인정  
(※ 2전공 학점인정을 받는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-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, 2전공  
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, 융합전공 인정 가능, 연계/심화 학점인정 불가)  
나. 성적평가: P(급제)/F(낙제)로 표시,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.  
다.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 
1) 실습생 본인의 귀책 사유(중도포기, 결근, 지각 등)로 인한 해지의 경우: "F" 처리  
2) 기업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: 실습기업 재배치

## 11. 실습생 준수사항

- 가.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.  
나. **사전 직무 교육에 반드시 참가**를 원칙으로 하며,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.  
다. **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의 실습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.**  
라.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.  
마.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점인정 관련 서류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에 제출함.  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  
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.  
사. **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.**  
**(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)**

- 붙임 1. 2025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 
2. 2025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관련 서류 각 1부  
3. 현장실습학기제 지도점검표 양식 1부. 끝.

2025. 10. 20.

대 학 일 자 리 본 부 장